

인 재 모 집 (NCS기반 블라인드 채용)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교육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서 21세기 교육·학술정보화 선도에 함께할 인재(무기계약직)를 모집합니다. 채용분야 수행직무는 모집분야의 주요업무 및 직무기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채용 규모 및 분야

○ 채용규모 : 총 1명

- 공개경쟁채용(무기계약직) : 1명

채용분야		채용인원	주요업무	근무형태
무기계약직 (운영직)	운전	1명	· 임원 차량의 운행 및 관리에 관한 업무 등	주5일 근무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가. 필수 자격요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인사규정」 제18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등

○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

채용분야	필수 자격요건
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종 보통면허 이상 소지자 · 병역필, 면제자, 또는 비대상자 · 임용예정일부터 현업에서 전일근무 가능자 · 임용예정일 기준 우리 원 무기계약직 및 운영직 관련 규정에 따른 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운전분야 정년(만 60세) : 1962.07.30. 이후 출생자

나. 공통 우대사항

○ 취업지원(보호)대상자는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하여 가점 부여

- 취업지원(보호)대상자는 증빙서류*를 지원서 마감시간(6월 15일 18:00)까지 채용시스템에 등록(PDF)하고 등기우편(인편)으로 제출하여야 함

※ 취업지원(보호)대상자 : 법령 등에 취업지원 가점부여 의무가 명시된 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 등기우편은 지원서 마감시간(6월 15일 18:00)까지 우체국 소인이 있는 경우 접수 유효

* 채용시험 가점비율과 제출기관(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기재되어 있는 증빙서류에 한함

[가점 근거 및 인정기준] : 아래항목 중 최고 점수 1개 항목만 인정

구분	가점 및 우대 구분	이행근거	이행방안
가점 적용	취업지원(보호)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법률상 가점부여가 명시된 경우	법률에 명시된 사항에 근거하여 가점 부여 (만점의 5%/10% 가점)
인정 기준	1. 가점·우대점의 인정은 관련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한다. 2. 인성검사 및 점수로 환산이 불가능한 시험에는 가점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가점이 중복 부여될 시, 큰 비중의 가점을 적용한다. 4. 상세한 점수 인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구 분	세부내용	
	취업지원(보호)대상자	법령 등에 취업지원 가점부여 의무가 명시된 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다. 채용분야 우대사항

채용분야	우대사항
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원 차량 운전 등 수행기사* 업무 3년 이상 경험자 *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임원수행 여부)가 반드시 명기되어야 함 · 제1종 보통면허 취득 후 최근 5년 이상 무사고* 운전 경력자 * 해당 면허 취득 이후 최근 5년 이내(2016.06.01.~현재) 사고 이력이 없는 경우 인정

3. 응시방법

가. 원서접수 : KERIS 채용홈페이지(keris.recruiter.co.kr)의 '채용공고'에서 등록

나. 접수기한 : 2021년 6월 15일(화) 18:00까지 온라인 제출

다.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및 증빙서류(온라인 등록 및 관련 서류 별도 제출)

채용분야	관련사항	비고
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용예정일 기준 우리 원 운영직 관련 규정에 따른 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운전분야 정년(만 60세) : 1962.07.30. 이후 출생자 • 제출서류 : 운전경력증명서*(PDF) 온라인 등록 필수 • 취업지원(보호)대상자 등은 입사지원서 해당란에 표기 • 취업지원(보호)대상자**는 입사지원서 해당란에 표기하고 증빙서류를 등기우편(인편)으로 필수 제출 	<p>기재착오 및 누락시 가점부여 등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허위기재가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p>

* 운전경력증명서 : 경찰서 방문, 정부24(www.go.kr), 경찰청교통민원(www.efine.go.kr)에서 발급
(운전면허경력, 법규위반 및 교통사고 모두 "전체경력"으로 설정하고 발급사유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취업지원용"으로 발급하여야 하며, 공고일 이후 발급 건에 한하여 유효함)

** 취업지원(보호)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취업지원 가점부여 의무가 명시된 자 ([붙임 1] 참고)

※ 취업지원(보호)대상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지원서 마감시간(6월 15일 18:00)까지 온라인 등록(PDF)하고 등기우편(인편)으로 제출하여야 가점 부여됨

-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인재경영실 인사담당자 앞
- 등기우편은 지원서 마감시간까지 우체국 소인이 있는 경우에만 접수 유효함
- 취업지원(보호)대상자 증빙서류에 제출기관(한국교육학술정보원) 및 채용시험 가점비율 기재 필수

4. 근무 조건

가. 근로조건 : 우리 원 관련 내규에 의함

○ 근무시간 및 보수

채용분야	근무형태	기본급(월)
운전	주 5일 근무	2,193 천원

※ 상기금액은 월기본급 기준(세전)이며, 연장근로 및 수당에 대한 보수는 내부 기준에 따름
나. 복리후생 : 우리 원 관련 내규에 의함

다. 근무장소 :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64 한국교육학술정보원

5. 전형절차 및 주요일정

가. 전형절차

○ 서류전형은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 내에서 선발

※ 서류전형에서 선발배수를 초과하는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 합격

- 면접전형은 역량 기반 구조화 면접으로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수행능력 면접을 통합하여 단계별(1차 면접, 최종 면접)로 진행

구분	출제 범위
직업기초능력 면접	• 지원자의 상황, 경험, 인성, 포부 등 기초적인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 주제
직무수행능력 면접	• 담당 예정 직무와 연관성 있는 직무지식, 직무수행 관련 주제

- 1차 면접 : 직무수행능력(100%)
 - ※ 채용인원의 5배수 범위 내에서 선발(선발배수를 초과하는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 합격)
- 최종 면접 : 직업기초능력(80%), 직무수행능력(20%)
 - ※ 최종 면접전형을 통해 최종합격자를 선발함

나. 주요일정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차 면접	⇨	1차 면접 합격자 발표	⇨	최종 면접	⇨	최종합격자 발표	⇨	임용발령
6월 15일 18:00까지		6월 25일		6월 29일		7월 1일		7월 6일 ~ 7월 8일		7월 19일		7월 29일 (예정)

※ 상기 전형일정은 우리 원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6. 제출서류(1차 면접전형 시 서면제출, 본인 확인 및 진위여부 확인용)

<p>가.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1부 ※ 최종학력이 대학원 이상 졸업자인 경우 대학 및 대학원 각각 제출</p> <p>나. 입사지원서 상 기재한 교육사항 이수내역 증빙자료(성적증명서 등) ※ 성적증명서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학교교육 내역 포함 필수</p> <p>다.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포함) 각 1부</p> <p>라. <u>운전면허증(사본) 및 운전경력증명서*(채용공고일 이후 발급 건에 한하여 유효함) 각 1부</u> ※ 단, 운전경력증명서는 입사지원서 접수 시 파일(PDF) 온라인 제출 필수 * 경찰서 방문, 정부24(www.go.kr), 경찰청교통민원(www.efine.go.kr)에서 발급(운전면허경력, 법규위반 및 교통사고 모두 "전체경력"으로 설정하고 발급사유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취업지원용"으로 발급</p> <p>마. 외국어 및 수상·자격·면허 사본(입사지원서 상 외국어 및 수상·자격·면허 사항 입력자 필수 제출) 각 1부</p> <p>바.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수습확인서 각 1부(입사지원서 상 경험/경력사항 입력자에 해당) ※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제출 *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출력</p> <p>※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임원수행 여부 등)가 반드시 명기되어야 함</p> <p>사.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들의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붙임 2] 참고)</p>
--

7. 기타 안내사항

- 가. 최종합격자는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종료 후 수습 평가결과에 따라 고용계약 계속 여부 결정
 - 나. 채용 관련 청탁자, 비리연루자, 부정합격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되며, 본원 「직원채용업무처리지침」 제 15조에 의거하여 우리 원 채용시험에 대해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함
 - 다. 접수마감시한에 임박 시 지원서 접수 폭증으로 인해 입사지원서 작성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시한 이전에 여유를 두고 지원서 작성 및 접수 요망
 - 라. 입사지원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출신지, 출신지역 등 개인 인적사항이 입력(기록)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
 - 마. 입사지원서 작성 후 최종마감 시한 전까지는 자유로운 열람과 수정이 가능하며, 지원서 제출 완료 후에는 수정 불가
 - 바. 입사지원서에 본인 부주의로 인한 표기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 책임으로 하며, 지원 자격의 허위 판명, 각종 증명서 미제출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입사 후에도 임용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우리 원 입사시험 지원 제한은 물론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사. 서류전형, 면접전형 등 전형과정에서 일정 수준에 미달할 경우 채용 예정 인원을 축소 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아. 각 전형별 이의가 있는 경우 본원 「인사관리규칙」 제13조의 2(채용 불합격자의 관리)에 의거, 【붙임 3】 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thanks@keris.or.kr)
 - 자. 채용과정 중 제출 서류에 대해 반환청구를 요청하는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붙임 4】 양식을 작성 및 서명 날인하여 이메일로 제출(thanks@keris.or.kr)
- ※ 최종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에 요청 시 제출 서류 반환(전자서류 제외)

8. 문의처

채용형태	채용구분	채용분야	문의처
무기계약직 (운영직)	공개경쟁채용	운전	053) 714-0394 thanks@keris.or.kr



KERIS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붙임 1] 취업지원대상자 가점부여 관련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4.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5.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제30조(취업지원 실시기관) 취업지원을 실시할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과 같다.

2. 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公·私企業體) 또는 공·사단체(公·私團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체로서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제외한다.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가.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나.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가.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나. 제2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취업지원) ① 국가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②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국선열의 유족
2. 애국지사 및 그 가족 및 유족

3.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녀 1명. 이 경우 질병·장애 또는 고령 등의 기준과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순국선열의 유족 및 애국지사

나. 애국지사가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일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애국지사의 가족

나. 애국지사가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다.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지원을 할 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제30조,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제2항·제3항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가구당 3명(취업지원 대상자 중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는 3명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에게만 취업지원을 한다.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취업지원) 국가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제33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2.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3.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

② 취업지원 대상자는 제37조 및 제41조에 따른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제37조제2항에 따라 채용되는 횟수와 제41조에 따라 고용되는 횟수를 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내에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34조(취업지원 실시기관)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2. 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公·私企業體) 또는 공·사단체(公·私團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체로서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제외한다.

3. 사립학교

제35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제3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 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 가점 대상의 계급·직급·직위와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9조(취업지원) 국가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제20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2.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4.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5.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②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실시할 경우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1명에게만 실시한다.

③ 취업지원 대상자는 제23조제2항에 따라 채용되는 횟수와 제25조에 따라 고용되는 횟수를 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내에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21조(취업지원 실시기관) 취업지원을 실시할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2. 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公·私企業體) 또는 공·사단체(公·私團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체로서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제외한다.
3. 사립학교

제22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가. 제2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나. 제2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가. 제2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나. 제2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 다. 삭제

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의 가점 대상 계급·직급 및 직위,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취업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1.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 또는 유족 중 배우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를 말한다)
3. 수당지급 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또는 유족 중 자녀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③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제3항, 제30조,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제4항 중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1급·2급·3급·4급 또는 5급의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본다.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취업지원) 국가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과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제1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
2.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4.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5. 특수임무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②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실시할 경우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1명에게만 실시한다.

③ 취업지원 대상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채용되는 횟수와 제22조에 따라 고용되는 횟수를 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내에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20조(취업지원 실시기관) 취업지원을 실시할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2. 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公·私企業體) 또는 공·사단체(公·私團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체로서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제외한다.
3. 사립학교

제24조(채용시험의 가점)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가.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나. 제19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가. 제1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나. 제1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 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또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 예정 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 가점 대상의 계급·직급 및 직위,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붙임 2]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법 제82조)되어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법 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법 제83조)를 받게 되므로, 공공기관 채용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로 재직 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비해당시 이하 작성 불요)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 공직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정의) 제3호(공직자)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단, 퇴직후 발생한 경우는 제외)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 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 사용, 수당·여부 부당수령 → 부패행위 해당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 부패행위 비해당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3-2. 작성일 현재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4-2.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집행이 종료되는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여부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4-3. 권익위법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년 월 일

지 원 자

(서명)

[붙임 4]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